

- 나)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
 다)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. 이 경우 복직발령일 전일까지는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

7) 다른 휴직 사유와의 관계

배우자 동반휴직 사유에 배우자의 학위취득 목적의 해외유학과 해외기관 임시고용의 사유도 포함

8) 기타

- 가)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

(1) 경력평정: 미산입

(2) 호봉승급: 승급기간에 미산입

- 나) 결원보충: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

- 다) 보수

(1) 봉급: 지급안함. 단,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

(2) 수당: 지급안함. 단,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

카. 노조전임자휴직

1) 근거: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제1항제11호

2) 휴직사유

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

3) 휴직의 요건

- 가) 휴직 대상: 남·여 교육공무원

- 나) 휴직인정의 범위

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 허가를 받은 교육공무원

※ 전임자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따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

4) 휴직기간 및 횟수

- 가) 법정휴직기간: 전임기간

- 나) 휴직의 신청: 휴직신청서를 제출받아 전임자 허가 및 휴직처리를 병행하여 처리토록 함(휴직 신청서를 전임자 허가신청서로 봄)

- 다) 휴직의 횟수,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은 따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

5) 휴직신청서류: 노조전임 허가 공문, 휴직원(소속, 직, 성명, 휴직사유, 휴직기간 등을 명시)

※ 전임자 허가조건, 허기기간 등을 감안하여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휴직기간 등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음

6) 복직절차

- 가) 원칙적으로 전임자는 휴직기간 만료 이전에 복직 불가

- 나) 휴직기간 중 전임자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타 임용권자의 복직허가가 있는 경우에 휴직자는 임용 권자에게 이를 신고(복직원 제출)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